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등〉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2
2. 재난 복구·구호 목적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절차 완화 등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21.
3. 회 부 일 : 2025.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공유재산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②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의 조사·분석·진단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공유재산 전문기관(안 제18조의4)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사 입법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²⁾.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분석·진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최근 공유재산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유재산 정책의 품질 향상,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등을 위해 공유재산 연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유사 입법례로 「지방회계법」 상 지방회계전문기관,³⁾ 「지

3) 「지방회계법」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전문기관⁴⁾ 등을 지정하여 회계·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5. 법 제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6. 그 밖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삭제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은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지방회계 및 지방계약 전문기관 현황

□ 지방회계 전문기관

- (지 정)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 거) 지방회계법 제13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 (예 산) '17~'20년간 매년 인건비 2.5억원 지원(민간경상보조)

□ 지방계약 전문기관

- (지 정)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5호)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 거) 지방계약법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3조의2
- (예 산)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자료 : 행정안전부

3)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⁶⁾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공유재산법」은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초로 전

6) 「공유재산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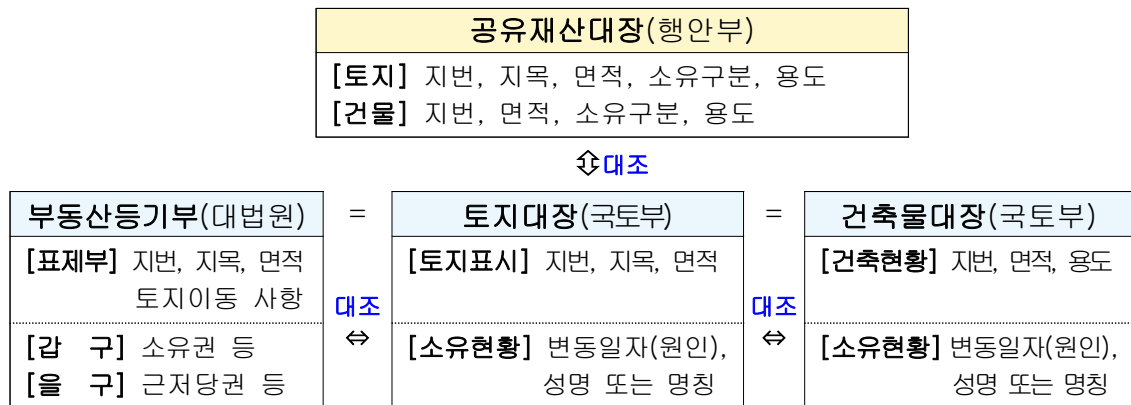
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을 정비하였음.

<공유재산 총조사 개요>

□ 사업개요

- (대상)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 4종*
* 약 539만 4천건 조사
- (기간) 2024년 4월 ~ 2025년 6월
- (항목) 소유권 정보, 부동산 표시정보(지번, 지목, 면적, 용도 등)
- (방법)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상호간 소유권 정보와 부동산 표시정보의 일치여부를 일괄 비교·분석
- (성과)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 확인 및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 완료

□ 사업 추진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공유재산 총조사’ 실시로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 마련 계기) 재구성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정기화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파

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공유재산 총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공유재산 전문기관(안 제18조의4)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사 입법례로서 「통계법」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인구총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⁷⁾, 「에너지법」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⁸⁾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7) 「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총조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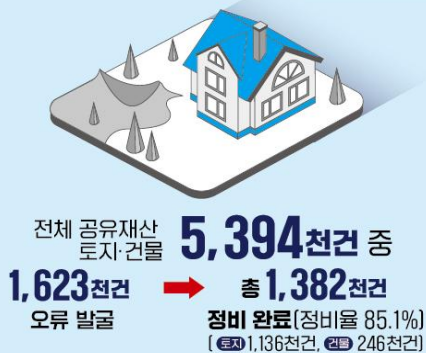
공유재산 총조사로 숨은재산 157천건 발굴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마련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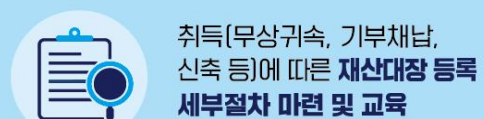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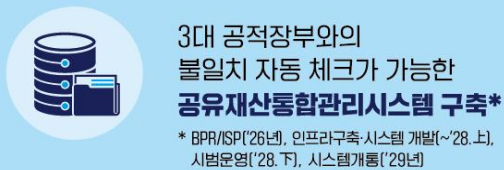
- 개념**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현황 전수조사
- 기간** 2024년 3월~2025년 6월
- 방법**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일괄 대제(프로그램 개발·활용)를 통해 불일치 사항 추출, 지자체 이력 확인 등 통해 일괄정비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조사 정비 결과



향후 추진계획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제공

부진
지자체

컨설팅 교육 지원



※ 자료 : 행정안전부

2. 재난 복구·구호 목적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절차 완화 등

개정안은 ① 재난 복구 및 구호목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 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②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 -----따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삭제>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따른-----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따른-----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6. ----- ----- -----사항

③·④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신설> ②·③ (생략)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기간 대 부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은 공유재산¹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어 관리·처분이 자유로우며¹¹⁾,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함¹²⁾.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¹³⁾

10) 「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유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11)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12)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13)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¹⁴⁾하거나 대부¹⁵⁾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대부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이때,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한 조직으로¹⁷⁾,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14)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

15) 「공유재산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16) 「공유재산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17)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사용료·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사용료·대부료의 감경’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면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하는 것도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사용료·대부료 감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불요
사용료·대부료 면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단, 재난 상황 제외)

이는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조속히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해당 감면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재난복구 및 구호의 특성상 시급한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현행 제2호(행정 재산 용도 변경·폐지) 및 제3호(일반재산 용도 변경)을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심의사항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데¹⁸⁾, 이는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의하면 재난복구 및 구호 외의 사유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므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재난 등의 상황에 있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 제24조제1항제4호는 재난복구·구호 목적이므로 개정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동의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